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3.0



## 국방부



수신 법무법인 향법 귀하 (우066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 층 (서초동))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 관련 근거 : 접수번호 2BA-1701-159056

2. 위 근거에 의거, 하주희 님이 요청한 사드 배치 사업계획 공고 열람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해 불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지합니다.

불임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1부. 끝.



행정사무관 대결 2017. 2. 16.  
최민영

협조자

시행 시설기획과-855 (2017. 2. 16.) 접수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http://www.mnd.go.kr

전화번호 군)900-5811, 팩스번호 02-748-5819 / mignon@mnd.go.kr / 비공개(2,5)  
일)02-748-5811

개방, 소통, 협력, 통합의 핵심가치로 새로운 국방행정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인(경북 성주군 초전면 인근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BA-1701-1354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8월 22일에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요청한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여, 한미 국방부는 달마산 부지(성주 C.C.)를 최종적인 주한미군 THAAD 체계 배치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THAAD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바, 요청하신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시설기획과 최민영사무관 (☎02-748-58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